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9월 14일, 김의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9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9. 1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의겸의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
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
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

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개정안은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외에 다른 수사기관 유치장에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 방법을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경찰서유치장 외에 다른 수사기관의 유치장에도 유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따라, 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 방법을 규정하고, 감치를 위한 구속집행자 및 유치장소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및 해당 수사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감치 재판에 따른 유치장소에서 “구치소”가 삭제되는 문제가 있는데, “구치소”를 현행대로 감치 장소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수정의견과 같이 “구치소”를 유치장소로 추가하는 내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 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민사소송법」 제311조제4항의 유치장소에서 구치소가 누락되므로
감치 재판에 따른 유치장소에 구치소를 추가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11조제4항 중 “유치장이나 교도소”를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민사소송법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 ----- ----- - 교도소·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 -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개정안과 같음)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생략)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관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헌행과 같음) ④----- ----- ----- ----- 중대범죄 수사청수사관·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 ----- 유치장, 교도소 또는

	-----.	<u>구치소</u> -----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
		⑤ ~ ⑨ (개정안과 같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 중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교도소·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도소·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11조제4항 중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u>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 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u> 게 할 송달은 <u>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u> 한다.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u>교도소 · 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u> ----- ----- ----- <u>교도소 · 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u> ---.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생략)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u>경찰 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u> 으로써 집행한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중대 범죄수사청수사관 · 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u> ----- -----.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